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. 6. 16 선고 2020가단20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

변론 종결 2021. 4. 28.

판결 선고 2021. 6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0. 11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67,937,19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7,937,1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의 연대보증 아래 유한회사 D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, 2020. 2. 3. 현재 연체된 원금 및 이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총67,937,193원(=64,950,337원 + 2,986,856원)이다(아래 2번 대출잔액은 55,000,000원이지만 원고는 다른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받을 46,750,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주장한 다).

(단위: 원)

번호	대출일	대출금	상환기일 (연장된 기일)	연체개시일	대출잔액 (미수이자)	연대보증인 (보증한도액)
1	2015. 10. 20.	60,000,000	2016. 10. 20. (2019. 10. 18.)	2019. 10. 4.	42,000,000 (1,104,408)	C (72,000,000)
2	2015. 10. 26.	75,000,000	2016. 10. 21. (2019. 10. 18.)	2019. 9. 21.	8,250,000 (1,323,303)	C (13,500,000)
3	2013. 1. 9.	신용카드	결제일: 매월 27일	2019. 10. 29.	14,700,337 (649,145)	C (74,160,000)
합계					64,950,337 (2,986,856)	

나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.

- 1) 2013. 9. 2.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
 - 2) 2013. 9. 2.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채무자 C, 채권최고액 3억 6,000만원), 이는 2019. 11. 26. 말소됨
 - 3) 2019. 10. 16. 피고 명의로 2019. 10. 11. 매매(이하 '이 사건 매매'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
 - 4) 2019. 11. 26. 주식회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채무자 피고, 채권최고액 3억3,000만 원)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매매 당시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외에도 400,710,000원 상당의 분양권이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다.

다.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

1) 적극재산

가) 별지 기재 부동산

이 사건 매매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5억 원이고, 당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85,000,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므로,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적극재산은 215,000,000원(= 500,000,000원 - 285,000,000원)이 된다.

나) 아파트 분양권

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, C은 2019. 10. 14. 계약일을 2017. 1. 6.로하여 목포시 F건물 G호 분양권 매수신고를 하였고, 같은 날 위 분양권의 매도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은 2019. 10. 14.로, 매도금액은 400,710,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.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의 대상이 되고,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적극재산이 될 수 있고, 채무자 C은 2017. 1. 6. 위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매매일 당시까지이를 보유하였으므로,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된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분양권은 그 존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, C은 같은 날짜에 위 분양권에 대하여 매수신고와 매도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, 이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2019. 10. 16. 이전에 처분한

것이므로 위 분양권은 적극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그 존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, 분양권 보유 여부는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도 아니며,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를 한 날(이 사건 매매일)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에 따라 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덧붙여, 원고가 위 분양권이 적극재산임을 이미 자백하였으므로, 그 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.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0. 12. 15.자 준비서면에서 위 분양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켰고, 피고가 2021. 1. 21.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였으며, 그 후 원고가 2021. 1. 26.자 준비서면에서는 적극재산이 아니라면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.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로 하여야 하는데, 원고의 2020. 12. 15.자 준비서면은 이 사건 4회 변론기일에 진술하였고, 그 후 피고의 2021. 1. 21.자 준비서면과 원고의 2021. 1. 26.자 준비서면은 모두 5회 변론기일에 진술되었으므로, 아직 자백이 성립하기 전에 원고가 그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

다) 따라서 채무자 C의 적극재산은 615,710,000원(= 215,000,000원 + 400,710,000원)이다.

2) 소극재산

가)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이 사건 매매일 당시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의 '원고 주장채무액' 기재와 같고, '인정된 액수'는 그 중 이 법원이 인정한 액수이다.

순번	금융기관	원고 주장 채무액	인정된 액수
1	A	285,676,135원	0원
2	H조합	39,221,447원	39,221,447원
3	A	20,100,000원	20,100,000원
4	신용보증기금	46,750,000원	46,750,000원
5	I보증보험	100,000,000원	74,181,781원
6	전남신용보증재단	23,432,763원	23,432,763원
7	A	111,700,000원	111,700,000원
8	기업은행	39,308,000원	0원
9	J은행	4,986,000원	0원
합계		671,174,345원	315,385,991원

나) 먼저 A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, 위 표 순번 1번의 채무는 이 사건 매매일인 2019. 10. 11.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사실이 인정된다. 사해행위에서 소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은 제외하여야 하므로, 이는 소극재산이 될 수 없다.

다) 위 표 순번 5번의 채무에 대하여 본다.

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

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).

갑 제5호증의 기재 및 I보증보험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, I보증보험이 2018.6. 22.경 유한회사 D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100,000,000원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고, 이와 관련하여 C은 유한회사 D의 I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2019. 11. 29.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I보증보험은 2019. 12. 12. K 주식회사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고, 그 후 C이 I보증보험에 구상금을 일부 변제하여 2021. 1. 4. 현재 구상금 74,181,781원(= 원금 67,640,447원 + 이자 6,321,133원 + 법적조치비용220,201원)이 남은 사실이 인정된다.

이에 의하면, 비록 이 사건 매매(2019. 10. 11.) 당시는 보험사고 발생 전이므로 C의 I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도 아직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,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은 이미 1년 반 전에 체결된 상태였고,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채무가 성립한 점에서, 구상금채무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다. 다만, 그 후 채무자인 C이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그 채무액이 74,181,781원으로 감액된 점에서, 이 사건 매매 당시의 소극재산도 74,181,781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.

라) 위 표 순번 8, 9번 채무에 관하여 본다. 갑 제5호증(L의 신용통합정보조회)의 기재만으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마) 그 밖의 순번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.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순번 7번에 포함되어 있다.

바) 결국 이 사건 매매일 당시 C의 소극재산은 315,385,991원이다.

3) 소결론

채무자 C이 이 사건 매매로 처분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채무자 C의 적극재산은 400,710,000원인 반면, 소극재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315,385,991원에 불과하므로, C은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영남